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·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○ 다량배출사업장 지정 시 음식물 쓰레기발생량이 적은 호프, 카페 등의 관련업계 불만 및 건의가 빈발

○ 이에, 영업장 면적 이외에도 업태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업태 특성을 고려한 예외규정 마련

○ “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 2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”을 “일반음식점(음식물류를 조리·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음식점은 제외) 및 휴게음식점(주로 차류를 조리·판매하는 다방 및 빵·떡·과자·아이스크림류를 제조·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) 영업장 면적 2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”으로 개정

나.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의2, 제14조제1항, 제15조의2, 제68조제3항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8조의4,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3제2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기타
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.(2014.10.14. ~ 2014.11. 3)

○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.

성주군 조례 제　　호

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·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·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2호 중 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호 내지 제6호”를 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1호 내지 6호“로, “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장 2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”을 “일반음식점(음식물류를 조리·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음식점은 제외) 및 휴게음식점(주로 차류를 조리·판매하는 다방 및 빵·떡·과자·아이스크림류를 제조·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) 영업장 2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“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법 제13조제1항”을 “법 제1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”영“이라한다)제6조제1항제5호”를 “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법 제63조제3항제2호”를 “제68조제3항제4호 및 제4의2호”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2】

과태료 부과기준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.

나.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.

2.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

적용법	부 과 항 목	부과금액(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이상 위 반
폐기물 관리법	1.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을 위반한 경우(**법 제13조 관련**)			
	가. 음식물류 폐기물을 군수가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	5	10	20
	나.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	5	10	20
	2.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**(법 제15조의2 관련)**			
	가.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	20	50	100
	나.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(변경신고서 포함),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 ·보존하지 아니한 경우	10	20	30
	3.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, 개선·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**(법 제15조의2 관련)**	100	300	500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―――――――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
［별표2］ 과태료 부과기준

적용법	부 과 항 목	부과금액(만원) 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폐기물관리법	1.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**(법 제15조 관련)**			
	가. 음식물류 폐기물을 군수가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	5	10	20
	나.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	5	10	20
	2.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**(법 제12조 관련)**			
	가.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	20	50	100
	나.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(변경신고서 포함),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한 경우	10	20	30
	3.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, 개선·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**(법 제12조 관련)**	100	300	500

［별표2］ 과태료 부과기준

적용법	부 과 항 목	부과금액(만원) 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폐기물관리법	1.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**(법 제13조 관련)**			
	가. 음식물류 폐기물을 군수가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	5	10	20
	나.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	5	10	20
	2.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**(법 제15조의2 관련)**			
	가.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	20	50	100
	나.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(변경신고서 포함),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한 경우	10	20	30
	3.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, 개선·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**(법 제15조의2 관련)**	100	300	500